

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
- 총 176개 국가지역 -

2020.3.23.(월), 20:00 외교부(재외국민안전과)

※ 국가지역별 가나다순

※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(대사관·총영사관·출장소·분관 등) 홈페이지,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① 입국금지 조치 : 138 국가지역

※ 명시적 입국 금지,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허용

가.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: 134개 국가지역

구 분		조 치 사 항
아시아·태평양	나우루	▶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3.)
	네팔	▶ 3.20. - 4.12. 24:00 한국, EU회원국, 영국, 서아시아, 이란 등 걸프 국가, 터키, 말레이시아,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8.)
	뉴질랜드	▶ 3.19.부터 외국인* 대상 입국금지(3.19.) * 임시 비자 소지자(학생, 임시 노동자 등), 여행객
	니우에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대만, 이란, 이탈리아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3.) ※ 니우에 정부가 발행한 서면 승인서가 있는 경우 입국 허용
	대만	▶ 3.19.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(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) ※ 3.24. 00:00(현지시간)시 부터 4.7.까지 여행객 대상 대만 환승 금지(3.22.) - 3.24. 0시(현지시간) 이전에 출발국가 및 지역에서 항공사 체크인을 완료한 경우 대만 내 항공기 환승 가능 ※ 3.21.(당일 포함) 이전에 무비자, 도착비자,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※ 대만 거류증, 외교공무증명서,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
	동티모르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9.) ※ 동티모르 출생 외국인, 거주 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
	마셜제도	▶ 2019.12.31. 이후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탈리아, 일본, 이란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(항공·해상)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2.28.)
	마이크로네시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2.24.)
	마카오	▶ 3.18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7.) ※ △중국(마카오 출입허가증 소지자), △홍콩(홍콩영주권 소지자), △대만(대만여권 소지자) 거주자 및 대만 출신 취업비자소지자 등 입국 허용 ※ 3.19.부터 그 외 국적 출신 취업비자소지자 등 입국 금지
	말레이시아	▶ 3.18.-3.31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6.) ※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하나 건강검사 및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(외국인 취업자, 학생,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)

구 분		조 치 사 항
	몽골	▶ 4.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2.) ※ △외교단·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, △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, △운송 분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
	바누아투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0.) ※ 영주권소지자 예외 ※ △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(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), △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, △왕복 항공권 필요
	베트남	▶ 3.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21.) ※ △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, △주요 대외 행사 참석, △전문가, 기업 관리자, 고급 기술 인력의 경우 입국 가능(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) ※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(한국의 경우 3.12.부터 이미 중단) ※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, 외교·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(전문가,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)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 함 ※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(2.29.) ※ 3.18.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(3.17.)
	부탄	▶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(3.6.)
	브루나이	▶ 3.24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(3.23.)
	사모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, 쿠웨이트,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/ 14일이 지난 경우,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(2.19.)
	사모아 (미국령)	▶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(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, 쿠웨이트, 대만, 독일, 스페인, 프랑스, 바레인 등)를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△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, △입국 3일 이내 발급된 건강검진서 제출 필요(3.6.)
	솔로몬제도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1.) ※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
	스리랑카	▶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(3.22.)
	싱가포르	▶ 3.23. 23: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(3.22.) ※ 싱가포르 국적자, 영주권자,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의 경우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
	쿡제도	▶ 3.16.-4.18. 외국(뉴질랜드 제외)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6.) ※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
	키리바시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(2.11.)
	투발루	▶ 입국 전 14일 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	통가	▶ 3.19.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스페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8.) ※ 내국인,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
	파푸아뉴기니	▶ 입국 전 14일 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5.) ※ 모든 외국인 대상 파푸아뉴기니 항발 국제선 탑승 금지(영주권자 제외)(3.22.)
	피지	▶ 한국, 중국, 이란, 미국, 유럽 국적자(여권소지자) 입국금지(3.21.) ※ 모든 쿠르즈션 입항 금지

구 분		조 치 사 항
	필리핀	▶ 3.22 00: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9.) -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△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(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), △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, △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※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▶ (Luzon 섬) 3.15.-4.14.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(육해공) 제한(3.16.) -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▶ (세부주) 3.17.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(3.14.) - 3.17.부터 외국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격리 - △내국인, 세부주 거주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, △세부주 내 거주지 없는 외국인 14일간 호텔 격리(호텔 비용 자부담) ▶ (일로일로주) 4.14.까지 입경을 제한하며, 위반 시 14일간 격리(3.15.) - △3.17 이전에 귀환하는 일로일로주 또는 일로일로시 거주자는 제외 ▶ (제너럴 산토스시) 3.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, 공항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, (다바오시)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▶ (바탕가스주)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
	호주	▶ 3.20.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(3.19.) ※ 영주권자,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 제외 ※ 타즈마니아주 비상사태선포, 3.20.부터 타즈마니아주로 들어가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(3.19.)
	홍콩	▶ 3.25.(수) 00:00부터 14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비거주자 입국경유 금지 ※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비거주자 입국 금지 ※ 마카오, 대만 발(發) 홍콩비거주자 입국 시 14일간 격리 ※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자가격리(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)(3.19.) -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/이동 및 출국 불가(위반 시 법적 처벌) / 최근 14일 이내 대구·경북을 방문,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정부격리시설 14일간 강제격리
미주	과테말라	▶ 3.17. - 3.31. 간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6.) ※ 단, 자국민, 영주권자, 외교단은 육로를 통해 입국 가능하나 입국시 의무검역절차 적용
	그레나다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유럽,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0.) ※ 3.23. 지정부터 모든 공항 폐쇄
	도미니카 공화국	▶ 3.19.부터 15일간 국경(육해공) 봉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7.)
	바하마	▶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5.) ※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※ 3.19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,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6.)
	벨리즈	▶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, 중국(홍콩 포함), 이란, 일본,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5.)
	볼리비아	▶ 3.20. - 3.31. 국경 봉쇄 및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※ 3.21.부터 볼리비아 향/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
	브라질	▶ 3.23. 00:00(현지시간)부터 30일 간 한국, 중국, 일본, 말레이시아, 호주, EU국가, 영국, 북아일랜드, 아이슬란드, 노르웨이, 스위스를 출발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0.) ※ 브라질 거주자격 소지자, 국제기구 파견 전문가, 브라질 정부 파견 외국인, 브라질 국민의 가족상봉 대상 외국인, 영주권자, 물류 운송 소지 외국인은 예외 ※ △입국금지 대상이 아닌 제3국에서 한국인이 귀국하기 위하여 브라질에서 환승 또

구 분	조 치 사 항
	는 경유하거나, △브라질 거주 우리 국민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음
수리남	▶ 3.14.부터 국경봉쇄(육해공)
아이티	▶ 3.19.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9.)
아르헨티나	▶ 3.16.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5.)
앤티가바부다	▶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(승무원 포함) 대상 입국금지(3.17.)
에콰도르	▶ 3.15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4.) ※ 자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.16.부터 입국 금지
엘살바도르	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2.) ※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30일간 지정시설 격리(3.17.)
온두라스	▶ 3.15.부터 3.29. 15:0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5.) ※ 자국민, 온두라스 거주자(외국인, 외교관은 상기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나) 입국 즉시 의무적 자가격리 ※ 온두라스 거주자(내외국인) 출국 금지 ※ 코로나19 관련 조치 위반 적발시 강제 구금
자메이카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이란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 ※ 영주권 보유자,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, 조건부(검사 및 격리) 입국허용되나 14일간 자가격리 ※ 상기 입국 금지 국가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
칠레	▶ 3.18.부터 15일간 국경(육해공) 봉쇄 및 모든 외국인(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) 대상 입국금지(3.16.) ※ 칠레 사증을 보유했어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
캐나다	▶ 3.18.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※ △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, △항공기 승무원, △외교관, △환승객 제외 ※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※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※ 3.21.부터 캐나다-미국 국경 30일간 폐쇄(3.18.) (단, 취업비자,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,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)
코스타리카	▶ 3.19.- 4.12. 24:00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6.) ※ 영주권 보유자, 외교관 등 외교공관 직원, 화물차 운전자, 주재국 경유자(입국장 밖 이동 불가) 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
콜롬비아	▶ 3.16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5.) ※ 3.18.부터 육상 및 해상 국경(페루, 브라질, 에콰도르, 베네수엘라(3.14~))을 봉쇄하여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과 출국 제한(3.16.) ※ 3.23.-4.21. 모든 내외국인 항공편 입국 금지 (3.19) ※ 3.25. 자정 - 4.12. 콜롬비아 전국민 대상 자가격리 조치 시행 발표 (3.20) ※ 대통령, ‘국가 비상사태’ 선포(3.17.)
쿠바	▶ 3.24.부터 30일 간 모든 외국인(관광객)의 입국 금지(3.21.) (단,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)
트리니다드 토바고	▶ 3.17.부터 14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6.) ※ 3.22. 자정부터 국경 봉쇄에 따라 공항 및 항구를 통한 내외국인 대상 출입국 전면 금지(3.21.)

구 분		조 치 사 항
	파나마	▶ 3.17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5.) ※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※ 선박의 승·하선 임시중단(3.13.)
	파라과이	▶ 3.16.-3.30.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6.)(단, 항공편을 통한 입국은 3.18.부터 3.30까지 금지) ※ △내국민, △외국민 영주권자, △파라과이 정부의 사전 입국허가를 받은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입국금지 대상은 아니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
	페루	▶ 3.17.부터 15일간 국경(육·해·공) 봉쇄로 인한 입출국 금지 조치 시행(3.16.)
유럽	그리스	▶ 3.18.-4.18. 06:00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(3.18.) ※ 의사 및 간호사, 보건 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, EU+국가내 장기체류자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 국민, 정부지원, 대사관·영사관·국제기구 직원·군인 등, 상품 운송 분야 종사자, 경유 승객 입국 가능 ※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재국 그리스대사관에서 예외적 입국 허가 신청 가능 ※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를 제외하고 이동 자제 ※ 3.21.부터 그리스 섬 방문 금지
	네덜란드	▶ 3.19.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및 비셴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8.) ※ EU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증 소지한 제3국 국적자, 장기체류 비자임시 거주증 소지자는 입국 가능
	노르웨이	▶ 3.16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4.) ※ 자국민, 체류 허가된 외국인,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(EEA)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※ 2.27-3.16. 입국자의 경우 △스웨덴, 핀란드발 제외 모든 내외국인 대상으로 노르웨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-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
	덴마크	▶ 3.14. - 4.13.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3.) ※ △덴마크 내 체류허가 된 외국인(근로자, 학생, 거주자 등), △수출입 관련 운송업자, △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재장례식재판 참석 등)는 입국 가능 ※ 입국 가능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강력 권고
	독일	▶ 3.17.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(3.17.) ※ 제3국 국적자로서 EU규정이나 회원국 법에 따른 장기 체류허가 소지자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로 목적이 자신의 본국(체류국) 이고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입국 가능 ※ 제3국 국적자로 △보건분야국경 업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, △외교관, 국제기구 직원, 군인, 인도지원 관계자, △경유승객, △긴급한 가족 관련 사안으로 여행중인 승객, △국제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승객의 경우 입국 가능 ※ 프랑스, 룩셈부르크, 스위스, 오스트리아, 덴마크, 이탈리아, 스페인 7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금지(단, 경유 및 환승 가능)
	라트비아	▶ 3.17-4.14.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4.) ※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
	러시아	▶ 3.18.-5.1 외국인 입국금지 ※ △외교공관, △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, △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, △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, △항공 및 선박 승무원, △국제철도운송 승무원(기관사), △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, △외교공무사증 소지자, △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, △영주권자 △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외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
	루마니아	▶ 3.23. 05:00(한국시간)부터 모든 외국인(무국적자 포함) 대상 입국 금지(3.21.) - 경유는 가능하나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 이동 ※ △루마니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, △EU/EEA 회원국, 스위스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에

구 분	조 치 사 항
	거주하는 가족구성원, △장기비자, 체류 허가증, 루마니아 또는 EU 회원국 정부가 발급한 체류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 소지자, △비자, 체류허가증,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문서를 통해 ‘professional interest’ 목적의 입국임을 증명하는 경우, △외교관영사국제기구 직원 등 △경유자, △필수적인 이유(의료, 가족 등)로 여행하는자, △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의 경우 입국 가능
리투아니아	▶ 3.16.-3.30. 12:00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5.) ※ 외교관 및 내국인은 14일간 격리
몬테네그로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5.) ※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
몰도바	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발(경유 포함)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(3.10.) ※ 3.17.-4.1.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과 열차 운행 중지(3.16.) ※ 3.17.부터 모든 외국인의 육로 입국 금지(3.16.) -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, 거주권 소지 외국인, 화물 여객운송 담당 승무원 및 기사는 제외
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	▶ 한국, 이탈리아, 이란, 중국(후베이성), 독일, 스페인, 프랑스, 루마니아, 오스트리아, 스위스, 벨기에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2.) ※ 상기 지역 이외에도 입국시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금지 또는 14일간 자가 격리 ※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
북마케도니아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6.)
불가리아	▶ 3.20. - 4.17.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(3.19.) ※ 단, 이탈리아, 스페인, 프랑스, 영국, 독일, 네덜란드, 스위스에서 출발한 외국인 입국 금지(3.18.) ※ △의료인력, △화물운송 인력, △외교관국제기구 직원 등, △인도적 사유로 인한 여행, △EU국가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거주지에 돌아가기 위한 경유자 등의 경우 입국 가능
사이프러스	▶ 3.15.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3.) ※ △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, △사이프러스 내 근로자, △외교관, △필수 전문직 종사자, △사이프러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 허용 - 3.16-3.30 사이프러스 공항(라르나카, 파포스)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 (미제출시 동일 항공편으로 귀국 조치)
세르비아	▶ 3.20.부터 국경(육·해·공) 봉쇄 및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5.) ※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(감염 심화지역에서 방문한 경우 28일간 자가격리)
스웨덴	▶ 3.19.부터 30일간 유럽경제지역(EEA) 소속국 및 스위스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7.) ※ 스웨덴 시민권자·영주권자·거주 허가자, 특별한 사유(외교관,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, 보건인력·상품운송인력 등, 가족 관련 긴급한 응수가 있는 자)가 있는 사람은 입국 가능
스위스	▶ 이탈리아, 독일, 프랑스, 오스트리아, 스페인 및 한국 등 비 쉥겐협약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9.) ※ 스위스 국적자, 스위스 체류허가 소지자, 경유자, 긴급상황(건강상 사유 등)의 경우 입국 가능
스페인	▶ 3.23. 0시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 금지(3.22.) ※ △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, △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 거주자, △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국으로 이동하는 자, △국경간 근무자, △보건·상품 운송분야 종사자, △외교관, 국제기구, 군인,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
슬로바키아	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※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, 임시·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, 슬로바키아 국민의 가족,

구 분		조 치 사 항
		슬로바키아 내 고용되어 있는 자, 슬로바키아 주재 외교관은 상기 조치에서 제외되나, 어떤 국가로부터 입국했는지와 무관하게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※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(3.12.)
	아르메니아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일본, 이탈리아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, 스위스, 덴마크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노르웨이, 스웨덴, 네덜란드, 영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6.) ※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, 거주 등록자, 외교단·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격리
	에스토니아	▶ 3.17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5.) -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 허용 ※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,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
	오스트리아	▶ 3.19-4.10(잠정) 비 쉥겐협약국에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 금지(3.19.) ※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, 인도지원사업 종사자, 보건 및 간호인력, 경유자,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※ 쉥겐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(한국인 포함)은 4일 이내 발급된 ‘코로나 19 음성 확인서’ 제시 의무(3.19.) ※ 거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(한국인 포함) 대상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
	우즈베키스탄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6.) ※ 자국민 출국금지
	우크라이나	▶ 3.15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(3.13.) ※ 거주권자(영구임시)는 상기 조치에서 제외 ※ △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, △외교공관/ 국제기구 사무소 직원인 경우 우크라이나 외교부의 사전 확인·승인 절차를 거쳐 입국 가능
	이탈리아	▶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7.) ※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의무 자가격리(무증상자 포함) ※ 3.17.-3.25. 업무상의 이유(입국 필수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)로 입국하는 경우 14일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체류기간은 72시간 초과 불가 - 특별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	조지아	▶ 3.18.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6.) ※ 3.21.-4.21. 국가비상사태 선포(3.21.)
	체코	▶ 3.16.부터 장기체류 외국인(영주권/90일 초과 비자/노동허가 소지자)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3.) ※ 체코국민, 영주권자,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 대상 출국 금지 ※ 3.14.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/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(3.13.) ▶ 한국, 이란, 중국, 프랑스, 덴마크, 영국, 벨기에, 스웨덴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스위스, 스페인, 이탈리아, 독일, 오스트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(자국민 포함)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(3.13.) ※ 위반시 최대 300만 코루나 벌금 부과
	카자흐스탄	▶ 3.16-4.15.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5.) ※ △영주권 소지 외국인, △카자흐스탄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, △외교관, 외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, △항공기, 선박, 열차 승무원, 물류 종사자, △외국 출입국 관계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- 영주권자 및 카자흐 국적자의 가족인 한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(3.17.) ※ 3.19.부터 누르술탄, 알마티 출입 및 이동 제한
	크로아티아	▶ 3.19.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8.) ※ 제3국 국민(EU,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) 중 △체류허가 소지자, △의료인, △경유자, △접경지역 근로자, △필수재화 화물기사, △군인, △경찰, △재난관리본부 직원, △외교관의 경우 입국 가능

구 분		조 치 사 항
	키르기즈스탄	▶ 3.17.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7.)
	터키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라크, 이탈리아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오스트리아, 네덜란드, 벨기에, 스웨덴, 노르웨이, 덴마크, 영국, 스위스, 사우디아라비아, 이집트, 아일랜드, 아제르바이잔, 조지아, UAE 국민 대상 입국 금지(3.17.) ※ 거주증(이카멧)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3.17.이후 터키에서 출국한 거주증 소지자는 재입국 불가(단 입국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) ※ 입국 전 14일 이내 상기 22개 국가를 여행한 제3국 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
	투르크메니스탄	▶ 3.20.-4.20. 모든 외국인 대상 출입국 금지(3.19.) ※ 외교단, 국제기구 직원, 국제운항 종사자, 기업인의 경우 조건부(출입국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) 출입국 허락
	포르투갈	▶ 3.19.-4.2.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비 EU회원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7.) ※ 스페인과의 국경(육해공)간 이동 제한 - 화물운송 차량 및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,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자국민에 한해 국경 이동 허가
	폴란드	▶ 3.15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3.) ※ 자국민,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, 주민카드 보유자, 거주 및 노동 허가 보유자, 화물운송차량 운전자,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
	프랑스	▶ 3.17.부터 30일간 쥘렌지역 및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(영국 국적자는 예외)(프랑스 경유를 통해 한국 귀국은 허용) ※ △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, △제3국 국적자이나 의료원 등은 예외
	핀란드	▶ 3.19.-4.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8.) ※ △핀란드로의 귀국, △EU/쥘렌국으로의 귀국 및 EU/쥘렌국 경유 귀국, △제3국 국적자의 출국, △불가피한 경우(귀국을 위한 경유, 가족 관련 사유, 인도적 사유, 보건의료긴급구조 인력 등) 는 입국 가능
	헝가리	▶ 3.16.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6.) ※ 외국인이 헝가리 국적자인 부모, 조부모,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입국 가능(단, 헝가리인 가족과 동반 입국 및 헝가리 체류증 소지조건 충족 필요)
중동	레바논	▶ 3.15.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5.) ※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(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-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)는 입국 가능
	리비아	▶ 3.16.부터 3주간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4.)
	모로코	▶ 3.17.부터 국경봉쇄(육해공)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
	바레인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(3.9.) ※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(검사, 격리 등) 입국 허용 - 의무 샘플검사 후 14일 동안 시설격리 ※ 3.18.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(3.16.) - e-visa 신청(www.evisa.gov.bh) 가능 ※ 상기 국가 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검사 실시 및 14일간 자가격리(3.16.)
	사우디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집트, 이탈리아, 이라크, 쿠웨이트, 레바논, 시리아, UAE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터키, 오만, EU, 스위스, 인도 등을 방문경유한 외국인 (항공해상) 대상 입국금지(3.8.) ※ 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(2.27.) ※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(3.7.) ※ 한국, 이탈리아, 이집트,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(3.8.)

구 분		조 치 사 항
	아랍에미리트	▶ 3.19.부터 한국을 포함한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 입국금지(3.18.) ※ 3.25.부터 2주간 모든 이착륙 및 환승 여객기 운항 중단(3.23.) ※ 3.19.부터 유효한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도 2주간 한시적 입국 금지(3.18.)
	알제리	▶ 알제리 항발 모든 여객 항공 및 선박 중단(3.17.) ※ 접경국(모로코, 모리타니아, 말리, 니제르, 리비아, 튀니지) 육로국경 폐쇄
	오만	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3.15.)(경유 제외) ※ 3.15.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방문비자 발급 중단(3.12) ※ 오만인 포함 모든 입국자(외교관 등) 대상 14일간 격리 ※ 오만 관광부, 오만 내 여행객 대상 본국 귀국 권고(3.18.)
	요르단	▶ 3.17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4) ※ 외교단 및 국제기구 직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등 보건부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예외 인정 ※ 3.19.부터 암만 출입 봉쇄
	이라크	▶ 한국, 중국, 이란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쿠웨이트, 바레인, 프랑스,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(3.8.)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 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
		▶ (쿠르드지방정부)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, 이란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쿠웨이트,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 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/ 2020.1.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
	이스라엘	▶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(3.9.) /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※ 코로나19 저확산 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이스라엘 내 안정적 거주지가 있을 경우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※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(수일 내) 출국 요망 ※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(3.5.)
	카타르	▶ 3.16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경유 승객 제외)(3.16.) ※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
	쿠웨이트	▶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(자국민과 직계가족,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)(3.11.) ※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※ 3.12.-3.26. 관공서, 은행,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
	튀니지	▶ 3.18.부터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6)
아프리카	팔레스타인	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마카오, 홍콩, 이라크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	가나	▶ 3.23. 0시부터 2주간 국경(육해공) 봉쇄(3.21.)
	가봉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9.) ※ 외교관(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)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※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※ 한국, 중국, 미국,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(3.13.) ※ 3.20.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
	감비아	▶ 사실상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1.) ※ 3.23.부터 3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
	기니비사우	▶ 3.18.부터 항공, 해상 및 육상 국경을 통한 입국금지(3.18.)

구 분		조 치 사 항
	나미비아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영국, 미국, 일본, 유럽 쉥겐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(3.17.) ※ 상기국가에서 입국하는 영주권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
	나이지리아	▶ 3.23. 24:00 - 4.23. 모든 국제공항 폐쇄에 따라 외국인 입국금지(3.23.)
	남아프리카 공화국	▶ 3.18.부터 한국, 이탈리아, 스페인, 독일, 영국, 중국, 이란, 미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5.) ※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비자 취소 및 기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, 입국 전 20일내 상기 국가 방문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
	니제르	▶ 3.19. 자정부 2주간(연장 가능) 국경 봉쇄(공항, 모든 육상 국경)
	라이베리아	▶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(3.16.)
	르완다	▶ 3.21. 23:59부터 향후 2주간 국경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21.) ※ 르완다인 및 적법한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※ 3.5. 이후 입국한 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
	마다가스카르	▶ 3.20.부터 30일간 국경봉쇄(3.18.) ※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(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)는 3.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※ 3.21.-4.4. 국가 보건 비상사태 선포(3.21.)
	말라위	▶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20.) *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미국, 스위스, 덴마크, 스웨덴, 영국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벨기에, 오스트리아, 일본, 핀란드, 그리스 ※ 상기 국가에서 귀국하는 자국민,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
	모리셔스	▶ 3.19.부터 15일간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8.) ※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,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(3.3.) ※ 3.16부터 레위니옹 발 모든 승객 및 3.18.부터 유럽, 영국, 스위스 발 모든 승객의 입국을 2주간 금지(3.16.)
	보츠와나	▶ 3.16.부터 한국, 중국, 일본, 미국, 영국, 오스트리아, 덴마크, 벨기에 등 18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6.) ※ 18개국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중단, 기발된 비자 취소 및 발급 중단
	부르키나파소	▶ 3.21. 자정부 2주간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(3.20.)
	상투메프린시페	▶ 3.19.부터 15일간(향후 연장 가능)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7.)
	세이셸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2.25.) ※ 3.18.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유럽국가(영국, 스위스, 프랑스령 마요트)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6.)
	수단	▶ 3.16.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6.)
	앙골라	▶ 3.20. 자정부 15일간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(3.18.) ※ 3.20. 자정 이전 입국자 대상 보건부 지침에 따른 14일간 자가격리
	우간다	▶ 3.23. 00:00부터 국경폐쇄(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)에 따라 모든 외국 입국 금지(3.20.)
	적도기니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	차드	▶ 3.19부터 국제공항 봉쇄(육로는 이미 봉쇄)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
	카메룬	▶ 3.19.부터 15일간 모든 국경(육해공)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7.) ※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
	케냐	▶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(3.15.) ※ 3.25. 자정부 2주간 모든 국제 항공 운항 중단

구 분		조 치 사 항
	코모로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7.)
	코트디부아르	▶ 3.22. 자정부부터 육해공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(3.20.)
	콩고공화국	▶ 3.22.부터 국경(육해공) 봉쇄(3.21.)
	토고	▶ 3.20.자정부부터 2주간 모든 여행객 대상 육로 국경 봉쇄 ※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에 대한 항공편은 이미 중단(3.16.) ※ 3.21.부터 수도 로메(Lome) 등 특정 도시 폐쇄

나.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: 4개 국가지역

구 분		조 치 사 항
아시아 태평양	몰디브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, 경북, 경남, 부산)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 금지(3.2.) ※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(2.3), 이란(2.26.), 이탈리아(3.8.), 방글라데시(3.9.), 스페인 전역 및 독일, 프랑스 특정 지역(3.15.), 말레이시아(3.17.), 미국, 영국, 스리랑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금지
	미얀마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 및 경북),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5.)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·경북 이외)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미얀마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(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, 기침,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)(3.15.) ▶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, 스위스, 영국,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노르웨이, 스웨덴,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20.) ※ 미얀마와 인접 국가*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(3.19.) * 중국, 태국, 인도, 라오스, 방글라데시
	인도네시아	▶ 3.8.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※ 한국발 입국자(국적불문)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(입국시 소지) - 영문 건강확인서는 △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·의원 등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 불요, △열,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‘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’ 라는 내용 및 검사일·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▶ 3.20.부터 한달 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(단기방문 무비자, 도착비자, 외교관/관용 무비자) 중단(3.17.) - 비자 신청 시 건강확인서 제출 필요 - 입국 시 외국(한국 포함) 소재 인도네시아 공관에서 발급한 비자 및 출국 전 7일 이내 발급한 건강 확인서 반드시 소지
	일본	▶ (입국금지)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) - 상기 지역에 더해 3.7.부터 경북 일부지역(경산시, 안동시, 영천시, 칠곡군, 의성군, 성주군, 군위군)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5.) ▶ (사증 제한) 3.9.부터 △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, △한국, 홍콩, 마카오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 정지(3.5.) ▶ (검역 강화) 3.9.부터 한국,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(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)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(3.5.)

구 분		조 치 사 항
		※ 한국, 중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항공기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소장 지정 장소 대기 필요(3.10.) ▶ (항공, 선박) 3.9.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(3.5)

2 격리 조치 : 14개 국가지역(시설 격리)

가. 중국 지역

※ 시설 격리외에 자가격리도 포함(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 있음)

구 분		조 치 사 항
중국 (지역별)	산둥성	▶ 산둥성(칭다오시, 웨이하이시, 옌타이시, 지난시 등) 진입시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20) ※ 3.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,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※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(기 입국자 사후 신고) 중이며, 시/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(주민위원회)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
	허난성	▶ 정저우시 진입시,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(3.5) ※ 해외에서 입국할 예정인 사람은 입국 2일전까지 거주지 관계기관(관리사무소 등)에 사전신고 및 정저우 도착 후 사후신고 필요(미신고시 비용 자부담)(3.17)
	랴오닝성	▶ 다롄공항, 국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(비용 자부담) ▶ 선양시 진입시, 3.19 0시부터 국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중 △무증상자는 지정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*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(비용 자부담) △유증상자는 병원 이송(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는 비용 자부담)(3.17) *검사 장소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되, 동 기간 숙식비용은 선양시정부 부담 ※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도착 1시간 내 직장 혹은 지역 사회에 보고하고 동일하게 14일간 격리 ※ 여타 도시로 이동시 임시 투숙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일괄 지정호텔에 투숙 (비용 자부담) ▶ 안산시 진입시, 모든 역외 유입 인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(비용 자부담)(3.16)
	지린성	▶ 창춘공항,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1) ▶ 옌지공항,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4) ※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※ 3.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복귀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,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, 이 외 이동 비용 · 핵산검사 · 폐 CT검사 비용은 무료
	헤이룽장성	▶ 헤이룽장성(하얼빈공항, 무단장공항 등)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모든 비용 자부담)(3.22) ※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※ 만 70세 이상 노인,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, 임산부,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
	광둥성	▶ 광둥성(선전, 광저우 등) 진입시, △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, △홍콩 · 마카오 · 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,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 · 방문 기록 있는 자, △여타 중국 지역으로 입경하여 광둥성에 도착하고, 광둥성 도착 전 14일 내 외국 거주 · 방문 기록이 있는 자는 국적 불문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 시설 격리(3.21 시행) ※ △유증상자는 병원 이동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, △기타 인원은 핵산

		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시 거주지별 지정차량으로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(광둥성 내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는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) ※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모든 유학생(국적 불문)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※ 핵산검사비용 외 의료비용 및 격리비용 자부담 ▶ 둥관시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미정)(3.21)
	푸젠성	▶ 푸젠성(샤먼시, 푸저우시, 취안저우시 등) 진입시, 최근 14일 내 경외(홍콩, 마카오, 대만 포함)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9) 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(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) ※ 만70세 이상 노인, 미성년자, 임산부,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가능
	후난성	▶ 후난성 진입시, 최근 14일 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등 전염병 발생 심각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△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), △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,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(비용 자부담)(3.4) 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(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)
	하이난성	▶ 하이난성(하이커우, 썬야 등) 진입시,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6) ※ 하이난성 도착 48시간 전까지 거주지 관리소(주민위원회)에 신고 필요 ※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 적용
	광시좡족자치구	▶ 광시좡족자치구(난닝시, 구이린시 등)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 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(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)
	상하이시	▶ 상하이시 진입시,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(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, 프랑스, 독일, 미국 등 총 24개 국가)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입경시 핵산 검사를 진행, △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, △양성일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(비용 자부담)(3.17) ※ 같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한 집에 머무를 수 없으나, 함께 자가격리 건강관찰을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는 한 집에서 자가격리 가능 ※ △유증상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, △상하이 내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는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, △자가격리 중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시설 격리 ※ 이상증상 없는 인원 중 상하이 인근 성(장쑤성, 저장성) 내 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전용차량 통해 원거주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방치에 따라 격리 가능 ※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(1주 이내) 출장자는 유효한 증명서(초청장 등)를 검역 당국에 제시하고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 △수시 건강 검측 △전용 차량 이용 △지정호텔 투숙 등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 가능
	장쑤성	▶ 장쑤성 진입시,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(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, 프랑스, 독일, 미국 등 총 24개 국가)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(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 상이)(3.18)
	저장성	▶ 저장성 진입시,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(비용 자부담)(3.18) ※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, 입경 전 사전 신고 플랫폼(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QR코드 참고)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/ 이미 입경한 경우,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
	쓰촨성	▶ 청두시 진입시, 최근 14일 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, 프랑스, 독일, 미국 등 총 16개 국가 방문이력이 있는 인원은 핵산검사 실시 후 △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 실시, △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(3.18)

	※ 목적지가 쓰촨성 내 다른 지역일 경우, 해당 지역 인솔 하에 이동하여 해당 지역 격리방침 준수 ※ 숙박비, 의료비, 교통비 등 모든 비용 자부담
충청시	▶ 충청시 진입시, 최근 14일 내 전염병 발생 심각지역(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, 프랑스, 독일, 미국 등 총 16개 국가)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입경시 핵산 검사를 진행, △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, △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(비용 자부담)(3.17)
원난성	▶ 원난성 진입시,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7)
구이저우성	▶ 구이저우성 진입시, 최근 14일 이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등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9)
산시성 (陝西省)	▶ 산시성 진입시,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(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)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7) ※ (시안 셴양공항)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, 37.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(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시) 또는 전원(하기 후 발열자 발생시)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-3일 대기,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대기 인원은 병원(양성) 또는 호텔(음성) 격리
간쑤성	▶ 간쑤성 진입시,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(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)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7)
닝샤후이족 자치구	▶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,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6) ※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도 14일 지정시설 격리
베이징시	▶ 베이징시(수도공항 등) 진입시,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6. 0시부터) ※ 단, 만70세 이상 노인,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, 임산부, 기저질환자 등 집중 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사전 신청 가능(입국 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정시설 격리) ※ 최근 14일 내 해외여행력이 있고, 중국내 기타 공항만으로 입국 후 베이징에 입경하는 인원도 사전에 거주단지에 베이징 복귀 일정과 관련 정보 통보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 ※ 3.23.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항공편은 12개 지정공항(톈진, 스좌좡, 타이위안, 후허하오터, 상하이푸둥, 지난, 칭다오, 난징, 선양, 다롄, 정저우, 시안)을 통해서만 우회 입경 가능하며, 동 방침에 따라 해당기간 인천-베이징 노선은 아래와 같이 운항 예정인바, 외교부·주중대사관 공지 및 항공사 최신 정보 등 수시 확인 요망 - 대한항공(KE): 칭다오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- 아시아나(OZ): 다롄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- 중국남방항공(CZ): 선양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 - 중국국제항공(CA): 다롄 공항 경유하여 베이징 도착
허베이성	▶ 허베이성 진입시,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5)
톈진시	▶ 톈진시 진입시,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 (3.18. 0시부터) ※ 단, 특수한 상황(①, ②)의 경우,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신청 가능(사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, 전문 인력 검토 후 동의시 자가격리 실시) ① 만70세 이상 노인, 미성년자, 임산부, 기저질환자 ② 단독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, 거주지 내 다른 동거인이 없을 경우 ※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출장자는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에 건강 검측 및 비즈니스 활동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 가능
네이멍구 자치구	▶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, 내외국민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5)

	신장위구르 자치구	▶ 신장위구르자치구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전원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9) ※ 격리기간 중 이상증상 발견 시 진료소로 이송(의료비용 자부담) ※ 해외에서 직접 또는 해외에서 중국 내 기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하는 내외국민은 도착 즉시 기차역, 공항 등의 검역요원과 거주단지 직원에 도착 사실 신고 필요
	후베이성	▶ 우한시 진입시,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(3.17) ※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,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도 추가 14일간 자가격리 필요

나. 기타 국가지역

구 분		조 치 사 항
미주	세인트루시아	▶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(2.26.)
	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2.28.)
	세인트키츠 네비스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홍콩, 싱가포르, 일본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-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,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
유럽	벨라루스	▶ 한국, 이탈리아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(2.25.) ※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(2.25)
	아제르바이잔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스페인, 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16.) ※ 3.13.부터 45일간 도착비자, e-비자 발급 중단, 상기 국가에서 비자신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수
	타지키스탄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아프가니스탄, 이탈리아, 미국, 프랑스, 독일, 스위스, 스페인, 스웨덴, 영국, 노르웨이, 네덜란드, 벨기에, 덴마크 등 11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(2.25.)
중동	모리타니아	▶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(3.15.)
아프리카	부룬디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EU국가, 영국, 미국, 호주, 두바이를 방문 후 입국하거나,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 호텔, 비용 자부담)(3.12.) ※ 3.19.부터 신규 비자 발급 중단(이미 발급된 비자의 경우 갱신·연장 가능) ※ 3.21. 23:59부터 7일간 부츨루라 공항 폐쇄
	베냉	▶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호텔, 외국인은 비용 자비 부담)(3.17.) ※ 입국비자 발급 제한(입국 후에도 정부 지정 호텔에서 14일간 격리(자부담))
	세네갈	▶ 입국 전 25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공항 내 순례자 이용 시설에 격리(3.18.) ※ 3.21.부터 모리타니아 간 육상 국경 봉쇄 / 3.23.부터 감비아와 21일간 육상 국경 봉쇄 및 감비아 출도착 모든 항공노선 중단 ※ 3.21.-4.17.간 모든 항공기를 이용한 입출국 제한
	시에라리온	▶ 3.16.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14.) ※ 코로나19 확진자 50명 미만 발생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※ 3.19.부터 모든 항공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사실상 입출국 불가
	에리트리아	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·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(3.11.)

구 분		조 치 사 항
에티오피아		▶ 3.23. 00:10(현지시간)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(Ethiopian Skylight Hotel, 비용 자부담)(3.22.) ※ 14일 격리조치는 환승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, 연결 항공편에 탑승할 때까지 Ethiopian Skylight Hotel에 머물게 됨(3.21.) ※ 3.21.부터 모든 환승객 대상 환승 비자 발급 중단(3.21.) ※ (주의) 3.23. 00:20(한국시간)에 인천에서 출발하여 3.23. 07:40(현지시간)에 에티오피아 도착하는 직항편(ET673)의 경우 상기 조치 적용 대상 / 운항 일정 수시 확인 필요

③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: 24개 국가지역

※ 사증 발급 중단, 자가격리(권고 포함), 도착 시 발열검사·검역 신고서 징구 등

구 분		조 치 사 항
아시아 태평양	라오스	▶ 3.20.부터 30일간 도착비자, e-비자 발급 중단 및 무사증 입국 중단(한국인 대상 3.21부터 적용) ※ 모든 외국인은 주재국 라오스 대사관(총영사관)에서 비자 획득 필요(단 관광 비자획득 불가) - 비자 발급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입국 전 14일간의 여행력 관련 서류 제출 필요 / 비자 획득 후 입국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국에서 출발한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
	방글라데시	▶ 한국, 중국, 이란 및 유럽(영국 제외)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외국인, 공항 인근 모스크로 이동 후 의무적 발열검사 실시(3.16.) - 이상 징후 없을 시 14일간 자가 격리 ▶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(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) - 건강확인서(영문)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
	인도	▶ (기존 비자 효력 중단) 3.13-4.15.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 ※ 외교관, 관용, 유엔/국제기구, 승무원, 고용비자, 프로젝트 비자는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 ▶ (신규비자 발급 중단)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(3.13) ▶ (격리조치) 2.15 이후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프랑스, 스페인,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격리(3.13.부터) ※ 고용·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증상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가능 ※ (몸바이 입국)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, 미국, 두바이,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△(A그룹)유증상자, 격리 치료 시설로 이동, △(B그룹)무증상자이나 60세이상, 당뇨, 고혈압, 천식환자, 병원 또는 호텔 격리, △(C그룹)B그룹에 속하지 않은 무증상자 자가 격리 ▶ (코로나19 음성 확인서) 비자 신청 후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필요하며,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(3.10)
	태국	▶ 3.22.부터 태국으로 입국하는(환승 포함) 모든 승객 대상 △코로나19 음성결과 확인서(출국 72시간 이내 발행), △건강확인서, △여행자보험(코로나 관련 치료비 총 10만불 이상 보장 보험)을 구비한 사람만 비행기 탑승 가능(3.19.) - 입국 시 발열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, △유증상(발열, 콧물 등)시 병원으로 이송, △무증상 시에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
	파키스탄	▶ 3.21 20:00- 4.4. 20:00까지 모든 입국 항공편(사실상 파키스탄 항발 입출국 모든 항공편) 운항 전면 중단(3.21.) ※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서* 제출 필수(3.17.) * 탑승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 검출기법(RT-PCR)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있어야 하며, 확인서에는 승객 이름과 여권번호가 기재되어야함(원본은 파키스탄 도착 공항에 제출)

구 분		조 치 사 항
	폴리네시아 (프랑스령)	▶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, △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/의료소견서 제출 (5일내)(2.27.) ※ 모든 국제선 승객/승무원은 14일 동안 타히티섬내 자가격리(숙소 또는 자택)
미주	가이아나	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일본, 브라질 등 15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, △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(3.12.)
	멕시코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홍콩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, △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, 정밀검사 실시(48시간 이내)후 감염여부 확인(2.29.)
	미국	▶ (괌) 3.19.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 후 괌에 입국하는 비거주자 대상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WHO,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부합하는 건강확인서 미지참시 괌 보건부(DPHSS) 인터뷰를 통해 자가격리 시설 적합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, 부적합 판정 시 지정시설 격리(3.18.) ▶ (하와이) 3.26. 00:00(현지시간)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(내외국민, 국제-국내선 방문객, 거주자 등 불문)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 - 거주자는 자택,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(비용 자부담) -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※ 항공 승무원, 응급상황 대응인원,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,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※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
	바베이도스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미국, 영국 및 유럽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△경증증상 시 자가격리, △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
	베네수엘라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, △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, △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(2.27.)
	우루과이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란, 이탈리아, 스페인, 독일, 프랑스, 미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3.13.) ※ 3.17.부터 아르헨티나와의 국경(육·해·공) 전면 봉쇄 - 우루과이 국민 및 거주 자격 보유자의 입국만 허용
유럽	몰타	▶ 3.13.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(집 또는 호텔)(3.13.) ※ 위반시 벌금 1,000유로
	아이슬란드	▶ 출발지를 불문하고 해외 24시간 이상 체류한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- 여행객 대상 자가격리 등 별도의 조치는 없으나 공항에서 문진 등 검색 가능 / 증상 발현 시 반드시 응급전화(+354 544 4113)로 먼저 연락
	알바니아	▶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3.11.)
	영국	▶ 대구, 후베이성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의무(3.13.) ※ 유증상자 7일간 자가 격리 및 증상 악화 시 온라인(111.nhs.uk) 또는 유선(999)으로 연락
아프리카	기니	▶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(14일) - 코나크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여권을 경찰에 맡겨야 하며,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근거로 여권 회수 가능(3.16.) ※ 코로나19 30명 이상 확진자 발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3.21.부터 30일 간 비자발급 중단
	남수단	▶ 입국 전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3.16.)

구 분		조 치 사 항
	말리	▶ 코로나19(확진자 500명 이상)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, △경증 증 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서 일일 건강 모니터링, △중증증상 시 격리시설 이송 ※ 3.19.부터 코로나19 발병국과의 모든 항공 노선 운항 중단
	모잠비크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프랑스,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△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, △유증상 시 격리(지정시설)(3.3.)
	민주콩고	▶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△발열검사 실시, △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, △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(3.2.)
	잠비아	▶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최소 14일간 자가격리(3.15.)
	짐바브웨	▶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△입국시 검사, △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
	중앙아프리카 공화국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*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, △유증상자의 경우 ▲ 14일간 자가격리(코로나19 환자 접촉자) ▲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(의심환자) ▲지정 병원 격리 치료(확진자), △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(3.6.) *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

※ EU 회원국(27개) : 그리스, 네덜란드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몰타, 벨기에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일랜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, 크로아티아 (밀줄 국가는 非생권협약 가입국)

※ 생권협약 가입국(26개) 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몰타, 벨기에, 스위스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이슬란드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 (밀줄 국가는 非EU 회원국). 끝.